

의안번호	2201561
의 퇴 인	박성훈 의원
회 답 일	2024.07.25.
추 계 번호	24C1703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8조의3 (보호자에 대한 교육)	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1.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2.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필요한 교육	의무규정
		(제2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(제3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4항)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 마련, 교육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8조의3 (보호자에 대한 교육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

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현재 시·도교육청에서는 ‘학부모의무교육, 전환기학부모교육, 학부모캠퍼스, 학조부모교육 등’ 다양한 학부모 교육사업을 운영 중임

□ 향후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구체적 지원 사업 내용과 예산규모, 지원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

-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자 교육 및 교육 참여지원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할 때, 개정안 시행 이후 보호자교육에 대한 체계적 시책 마련, 현행 사업의 확대 또는 관련 사업의 신설 가능성이 있으나, 현시점에서 증가 또는 신설될 사업의 구체적 내역 및 단가 등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
□ 이에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